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207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 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고용보험법」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4
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권되지 아니한 사람	<u>라</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제29조(결격사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	
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u>• 미성년자</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① ~ ⑤ (생 략)	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
지 아니한 사람	<u>라</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